

일본공공도서관 연수를 마치고

정 정 식

(서울특별시립 영등포도서관 사서과장)

1. 연수목적

- 가. 일본 국립 및 공공도서관의 자료수집·정리·보존·이용실태 파악
- 나. 도서관 전산화실태 및 정보관리 시스템과 이용자 서비스 제공실태 조사
- 다.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활동등 공공도서관의 각종문화 프로그램 조사

2. 연수자 : 전국 공공도서관 직원 31명

- 가. 국립중앙도서관 : 5명
- 나. 내무부(시, 도)소속도서관 : 11명
- 다. 교육부(교육청)소속도서관 : 15명

3. 연수기간 : '95.10.9~10.18

4. 연수대상기관(A조)

1	東京都立中央圖書館
2	東京都立日比谷圖書館
3	東京大學附屬圖書館
4	日野市立圖書館
5	國立國會圖書館
6	高槻市立中央圖書館

5. 현장견학

가. 東京都立中央圖書館

동경도립중앙도서관은 1908년 설립된후 1961년에는 도내 중소기업에 배분차를 이용하여 단체 대출업무를 실시하고 1988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도 도서관과의 도서관 자료교환업무를 실시했으며 1992년에는 CD-ROM으로

동경도 도서관 정보 network를 시작했다.

도서관의 조직을 보면 비상근의 문화계 인사로서 도서관장이 있으며 도내 도서관 협의회로서 동경도립도서관 협의회가 있고 관장 밑에 부관장(공무원) 그 밑에 관리부, 자료부, 히비야 도서관(日比谷圖書館)·多摩圖書館으로서 중앙도서관에서는 관리부와 자료부의 2개부서로 구분되며 관리부에는 서무과, 기획협력과, 자료부에는 수서과, 정리과, 참고과, 축하간행물과로 구분되어 주민봉사 및 기타 도서관과의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동경도내의 354개 공공도서관(구립 191개관, 시립 145개관, 촌·정 15개관, 출장소 3개관)과 유기적인 체제로서 주민봉사에 임하고 있으며 도서관 정원은 208명으로서 행정직 32명, 사서직 104명 촉탁 72명으로서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 중심체제의 도서관 운영과 72명을 고용하여 전문적인 업무, 일상적인 업무 등을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기획파트를 둬으로써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봉사체제를 확립하고 있음은 우리 도서관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는 총 1,352,701권으로서 일반도서 823,556권 중국서 23,659 동경관계행정자료 93,600권 특별문고 247,874권 지도 8,132권, 기타 155,880권으로서 23,659권의 중국도서를 소장하고 있는데 한국관계도서를 소장하고 있지 않음과 아동도서를 소장하고 있지 않은 것이 특이하고 신문 569종 잡지 9,671종을 소장하고 시청각 자료로서 영화필름 16mm 1,912, 8mm 비디오 tape 2, 슬라이드 264, 레코오드 4,862 녹음

tape 1,125 항공사진 87장을 소장하고 있었으며 개관시간은 월요일의 경우 13:00-20:00화, 수, 목, 금요일은 09:30-20:00, 토, 일요일은 9:30-17:00으로서 주민의 이용관계나 관내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정한 것은 획일적으로 이용시간을 정한 한국의 경우와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휴관일로서 정기휴관일은 첫번째 목요일이며 연말연시(12월 28~1월 4일) 휴관을 실시하고 매월 세번째 일요일을 보수 점검일로 정하고 있으며 특별정리기간을 연간 15일 이내로 정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한국의 도서관 휴관일과는 다른 점이라 하겠다. 자료실로서는 신문 잡지실, 일반 참고실, 사회과학실, 인문과학실, 자연과학실, 동경실, 특별문고실외에 시각장애자를 위한 특별열람실과 일반열람실 1실과 전시실, 복사실로 나누어 완전개가제로서 운영하는 것 또한 한국의 공공도서관과 다른점임을 알 수 있었다. 특별문고로서 유명인사들의 소장자료를 도서관에서 별도비치하여 이용시키고 있었다.

이중에서 특별문고실에는 동경에 관한 향토자료, 개인기증문고등 江戸시대부터 明治시대에 발간된 귀중본등을 보존하고 있고 東京室에서는 明治시대에서 江戸시대에 이르는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참고실에는 참고도서관외에 중국서, 전국의 전화번호부를 소장하여 이용시키고 있는 것이 특이했다.

자료수집은 출판사와 연결된 출판도매상에서 매주 3회정도 신간도서를 전시하여 실물을 보고 선정하며 일본의 전체 출판종수의 80%를 구입하고 특히 참고도서는 빠짐없이 수집하여 영구

보존하고 있는것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부러움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도서관 전산화는 수집, 정리, 검색등을 전산처리하고 전체장서의 80%가 입력되어 있으며 이용자 관리와 20%소급자료 처리가 미해결로 남아 있었다.

나. 東京道立日比谷圖書館

1903년 일본의 중심가에 개설된 히비야 공원(16만㎡)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관청가와 북동쪽으로는 皇居가 자리잡고 있다.

1872년 관립서적관으로 시작하여 1908년 히비야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관하였으며 2개의 봉사과로서 봉사제1과는 업무계, 시설계, 시청각계로 봉사제2과에는 일반대출계, 신문잡지계, 아동자료계로 조직을 구분하였으며 정원 38명, 內司書 27명, 촉탁 28명의 직원이 있으며 이 도서관의 중점사업으로는 관외대출, 아동도서자료센터 및 시청각도서, 교구의 대출등 3가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경도내 공공도서관 총장서 3천 2백만권, 좌석수 2만 500석 도서구입비 년 57억엔등과 이용자의 수에 있어 국립국회도서관 년 47만명 독립 중앙도서관이 42만명의 이용자가 있음을 비추어 볼 때 히비야 도서관은 장서 272,398권, 신문 210종, 잡지 1,714종 시청각자료로서의 영화필름 8,470 녹음자료, 슬라이드, 지도등의 자료를 가지고 참고조사의 경우 구두, 전화 문서등을 이용하여 년 102,132명 일일평균 365명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으며 관외대출의 경우 일반 이용자에게 개관일수 299일 등록자수 68,

099명 대출책수 356,911권 일일평균 1,194권, 아동에게 개관일수 255일 등록자수 397명, 대출책수 551권 일일평균 2권과 함께 연 100만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봉사를 하는 도서관으로서 동경내에서 가장 활용화되고 있는 도서관임을 알 수 있었다.

도서관의 시설로서는 아동자료실, 아동실, 시청각실(시청각 자료 신착속보를 발행배부), 일반대출계(신착도서 안내 발행배부) 인문과학실, 사회자연과학실, 신문잡지실, 복사실, 강당(정기적인 영화회개최, 신착필름소개 발행배부)등의 열람실로 나누어 주민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료열람실과 일반열람실(공부방)로 구분하여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다. 東京大學附屬圖書館

1877년 설립된 동경대 부속 도서관은 당시에는 현위치가 아니었으며 1923년 관동 대지진때 장서의 90%가 손실되었다 한다. 1928년에는 롤펠러 재단에서 자료를 기증받아 운영되었으며 전후 2차에 걸쳐 개수공사를 함으로써 국립 대학 도서관의 면모를 갖추었다. 부속 도서관 건물의 크기는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연면적 1,785㎡ 열람석 1,072석이며 동경대도서관 전체 장서는 690만권이며 연간 자료구입비는 15억엔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동경대 전체 도서관수는 64개 도서관으로 되어 있어 도서관의 방대함은 학생들의 연구와 조사를 뒷받침하는데 손색이 없다고 하겠다.

동경대부속도서관 건물외향은 책을 세워서 꽂

은 모양을 하고 있어 건축당시에 도서관 자체가 책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건축하는 세심함을 보여주고 있다.

도서관 견학은 2층, 3층으로 제한되어 전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전산기실은 multimedia system으로 되어 있으며 1996년에는 이 전산실이 대학의 컴퓨터와 연결하고 현재의 전산실은 없어진다고 한다. 외부와 관련된 정보는 Host computer만 보면 쉽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각 열람실의 조명시설은 제일로 잘 되어 있었다.

국제자료실의 교육용 단말기는 internet을 통하여 이용자 누구나가 쉽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EC자료 또한 누구나 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요금은 받지 않음) 열람실내에 미국의 지도 5만장을 소장하고 있음은 우리나라의 대학 도서관에서 세계 지도 수집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

학술정보센터와 연결되어 종합목록서비스는 전국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국제상호대차서비스(ILL), 정보검색서비스와 전자우편서비스 등이 잘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은 자료봉사로서 주민에게도 대출해주는 봉사체제를 확립하고 있음은 “자료는 만민에게 이용시켜야 한다는 원칙”이 잘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용자는 공공도서관을 통해 이용이 가능)

특히 장애자를 위한 전용엘리베이터 설치, 각종 감지기 설치등이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복사 서비스는 인쇄물 뿐만 아니라 디스켓으로도 받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대학도서관의 목적인 조사, 연구, 학술지원뿐 아니라 문화행사에까지 봉사의 폭을 넓히고 있었다.

라. 日野市立中央圖書館

인구 16만 2천명의 히노시는 동경에서 1시간 정도의 통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몇십년전만 해도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한다.

히노시에는 중앙도서관 1개와 8개의 분관 2개의 이동도서관이 있어 전 주민에 대한 도서관 봉사체제의 확립을 기하고 있었다.

1개의 도서관이 인구 2만명도 안되는 주민에 봉사하도록 되어 있음은 실로 우리 연수생들의 부러움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도서관은 전체1과 1계로서 직원수를 보면 직원 48명(사서39명), 촉탁 22명 위탁 2명 72명이 9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음은 우리나라 도서관인들이 무엇인가 느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 도서관 및독서진흥법을 제정하여 사립문고와 공립문고 설립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많은 작은 도서관을 설립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은 정말로 다행한 일이나 하는 생각도 든다. 또한 작은도서관에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 군, 구 조례 마련을 추진하여야 되리라 보며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근거한 좋은 조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도서관계를 돌아볼 때 실로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

필자가 시작한 작은 도서관을 봉사거점으로 삼아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 않은 도서관 봉사체제를 확립할 수

있을텐데 사서들이 빨리 법을 알고 자치 단체 조례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텐데….

아직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취지를 모르는 사서는 없는지 알고 있어도 조례 제정에 대한 절차를 잘 몰라 추진을 못하고 있는지, 전체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며 기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등에서도 측면지원을 해야하며 자치단체의 대표들(시의원, 군의원, 구의원, 도의원)에게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에 적극적인 봉사체제를 확립할 도서관 봉사망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히노도서관은 관장을 보좌하는 기구로서 도서관 협의회(10명)가 있으며 관장밑에 부관장, 부주간(서무 정리계장 겸임), 부주간이 있다.

부관장 밑에 서무정리계에 직원 9명(사서 7명), 위탁 1명, 업무계에 직원 12명(사서 11명), 촉탁 5명, 위탁 1명, 봉사계에 직원 19명(사서 14명)이 이동도서관(23) 직원 4명(사서 2명) 日野圖書館(233㎡) 3명(사서 2명), 촉탁 2명, 市政圖書館(140㎡) 3명(사서2명) 촉탁 1명 平山圖書館(549㎡) 2명(사서2명), 촉탁 2명, 社會教育圖書館(66㎡) 2명(사서1명) 촉탁 2명 多摩平兒童圖書館(105㎡) 1명(사서1명), 촉탁 1명 百草圖書館(759㎡) 4명(사서4명) 촉탁3명, 百草台兒童圖書館(40㎡) 1명 등으로 직원을 배치하는 봉사체제를 마련하였다.

봉사계와 高幡圖書館(1,358㎡) 직원 5명(사서5명), 촉탁 5명 등 4개의 조직으로 구분되어 많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음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계에서 눈여겨 보고 각 공공도서관에서는 많은 작은도서관을 주민들 스스로 만들도록 유도하고 자치단체에서도 공립의 작은 도서관(문고)을 만들어 사서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체제를 마련해야만 한다.

히노도서관 자료 소장 사항을 보면 중앙도서관 256,000권, 이동도서관 85,000권, 高幡圖書館 105,000권, 多摩平兒童圖書館 15,000권, 日野圖書館 42,000권, 社會教育圖書館 22,000권, 平山圖書館 45,000권, 百草台兒童圖書館 9,000책, 市政圖書館 38,000권 百草圖書館 68,000권의 장서를 가지고 주민들 가장 가까이 접근하여 봉사하므로서 자료 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있음은 순회문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 공공도서관에서 빨리 봉사체제의 전환을 기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작은 도서관(문고)을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건설부령으로 공포되었고 300세대 이상의 사업장, 6층 이상의 건물 등에도 자치 단체의 조례에 삽입하여 많은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 지도록 유도하고 작은도서관에 기부를 했을 경우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주민 또는 기업가 등에게 홍보하고 서울특별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면제에 관한 조례(1992. 9 23) “제2조1항” 다음 각호의 사회교육시설 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 또는 등기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업이 당해 토지및 건축물을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

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정한다.

1... 2... 3... 6.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92. 9. 23)에 나타난 바와같이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적용을 받는 도서관 및 문고로 지구 수정되도록 사서들이 시, 군, 구, 도 등의 조례를 살펴보고 개정 또는 제정되도록 추진을 하여 도서관 및 문고 설립을 위해서 취득하는 건물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1965년 이동도서관으로 시작한 히노도서관은 개관 당시에는 공부방의 역할에서 탈피하여 1973년에는 중앙도서관을 설립하고 이동도서관 주차장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8개의 분관외에 더 많은 분관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의 요청에 대한 과제가 있다고 한다.

히노지역에서는 자원봉사자에게도 약간의 경비를 지출해 줌으로써 자원봉사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통비라도 지출하여주는 자원봉사체제를 도서관에 도입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이동도서관의 경우는 자동차 2대로 47개소를 이동해 가며(한군데서 30~50분 정도 주차) 자료대출을 해주고 있다.

연수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도서 분실에 대한 처리 문제였으나 히노 도서관장은 분실에 대한 제적처리는 도서관장의 권한사항이며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직원 변상은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연수생들은 이상하다는 듯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듯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실처리에 각 도서관의 사

서들은 상당한 고민들을 하고 있으나 이는 도서관의 간부들 또는 사서,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법을 잘 모르는데서 오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나 물품관리법 또는 조례등을 참고하여 도서 분실시 직원에게 변상책임을 지게하는 경우가 있어 분실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가능한한 자료 이용을 촉진시켜야 할 사서들이 이용자 기피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었다.(도서관 봉사의 가장 큰 저해요인중 하나)

물품관리법 제5장 補則, 제49조(적용배제)를 보면 예산회계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로써 취득한 물품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물품관리법 제51조 ①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5조 법 제9조 내지 법 제13조 법 제15조 내지 법 제25조 법 제28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법 제38조 법 제43조 내지 법 제46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9.12.19)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 수표용지
3. 법령에 의하여 몰수하거나 국가에 귀속한 물품
4.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 예산 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 비로써 취득한 물품

6. 공직자 윤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선물

7. 도서, 서화, 예술작품, 동식물등 특수 물품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특성을 참작하여 당해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상기의 범조항에서 보는 바와같이 도서, 서화, 예술작품, 동식물등 특수물품은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령 51조에 명시된 적용배제 조항을 나열해 보면

1. 법 제5조(분류)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기능별, 성질별 및 기관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이나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소속분류를 전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의 기준, 소속분류의 전환 기타 물품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2. 법 제9조(물품관리관)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관

서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행할 수 있다.

3. 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위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법 제15조(수급관리계획) ①조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물품수급관리계획작성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물품수급 관리계획작성 지침에 따라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물품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종합한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5. 법 제25조(물품관리 사무의 전산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산처리 설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법28조(취득)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소급관리 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안에서 그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물품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기술자이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득할 수 없다.

7. 법 제35조(불용의 결정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중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8. 법38조(불용품처분의 요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기타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령 42조(불용품의 양여) 3항의 비영리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3. 정부 위탁업무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9. 법 제43조(자연감모) ①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는 자연감모로 하여 이를 정리할 수 있다.

②자연감모로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품명 및 자연감모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자연감모가 생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0. 법 제46조(손망실 처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물 조사의 결과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辨償命을 할 수 있다.

11. 법48조(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상기에 나열된 11개의 조항들은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물품의 손상실 처리에 있어서 도서는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공공도서관 상호협력을 활성화하고 자료대출의 효과를 얻기위해선 자료분실에 대한 손상실 처리가 용이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의 간부들이나 담당자들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자료관리에 있어 담당자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분실방지에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서관은 주민 또는 이용자들의 자료 이용욕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자료가 주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위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어야겠다.

히노도서관처럼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도 많은 분관을 두는 봉사체제가 확립되려면 특히 분실처리가 용이해야 됨을 강조하고 싶다.

마. 國立國會圖書館

국립국회도서관은 1872년에 설립된 건물을 기초로 현재의 우에노도서관으로 이어진 국립도서관계통과 구 제국시대의 귀족원과 중의원으로 이루어진 의회도서관 계통이 원류가 되어 연합국 점령하의 1948년 미국 의회 도서관을 본받아 국립국회법에 의해 현재의 국립국회도서관이 설립되었다.

국회의사당 옆에 있는 중앙관과 국회의사당 내부에 있는 국회분관, 支部우에노도서관 支部 동양문고, 정부 각청사의 도서관 및 사법각부문의 도서관 35개관으로 구성되었다.

운영은 衆·參 양의원의 의원운영위원회의 감독하에 국무대신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도서관장과 850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음은 우리 국회도서관은 250여명이 운영을 하고 있음과 비교할 때 직원이나 예산이나 기능면에 있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본관은 6층건물로 중앙서고식이며 이곳을 열람실과 사무실이 둘러싸고 있다. 서고는 한쪽이 45m 정방형으로 17개 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소장능력은 450만권, 서가의 총연장길이는 172km에 달한다 한다.

신관은 지하서고식으로 지상 1층~4층은 열람실, 지하 1~8층은 전부 서고로 사용하고 소장능력은 750만권이며 서가의 총길이는 240km에 달한다고 한다.

본관과 신관은 복도를 이용하여 기능적으로 연결되었으며 만 20세 이상의 성인은 국립국회도서관의 자료를 직접 이용할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회도서관이 이용제한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때 이용자의 자료 이용 편의를 위해 국민 누구에게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회도서관도 이용제한을 해제해야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지방에서 직접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각 지방의 대학, 공공도서관등을 통하여 자료의 대출, 복사, 참고서비스등도 해주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하루속히 도서관간의 상호대차제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도서관관계자 모임, 대학 당국과 공공도서관 관계자, 국회도서관, 국립도서관 관계자 모임,

대학 당국과 공공도서관 관계자, 국회도서관, 국립도서관 관계자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일본국내에서 간행되는 모든 출판물을 납본받고 있으며 국가나 공공단체의 출판물은 복권, 민간출판물은 1부씩 납본을 받고 있었다.

유일한 납본기관으로서 국내에서 간행되는 출판물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이 데이터는 자기테이프 형태로 수록되어 JAPAN MARC이라는 이름하에 CD-ROM도 배포되고 있으며 기본 장서 목록외에 문헌목록, 전문서지, 각종 색인류를 발간하고 있었다.

자료이용시 청구표는 기구에 넣어져 서고로 보내지며 자료의 대출 반납은 담당자의 손으로 이루어지며 서고내의 자료 발송용으로 수직의 벨트 콘베이어와 수평의 콘베이어가 설치되어 있다. 본관은 주로 도서, 신관은 잡지, 연감류가 소장되어 있다.

일본은 물론 세계각국의 국회의사록과 관보, 법령집, 조약집 등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제공을 하고 있으며 과학관계 자료는 1952년 정리가 시작되어 일본에서는 최대에 이르고 있다.

수집된 자료는 일본국민의 문화유산으로서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는 보존도서관으로서의 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며 자료 파손에도 적절히 대응하고 자료보존 대책으로서 출판시에 중성지를 이용하게 하거나 자료를 마이크로 필름으로 제작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국정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백

수십명에 달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 및 입법조사국을 국회 본관에 설치하여 정치, 외교, 경제, 교육, 사회복지 등의 조사 활동과 법률의 기초와 분석, 평가 등을 하고 있으며 의원 열람실도 설치되어 있다.

세계각국의 도서관과 협력을 하고 있으며 각국의 정부 간행물이나 민간 출판물 등을 교환하고 외국기관으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각 출판물의 대출, 복사, 참고서비스, 서지정보의 교환 등 다양한 봉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도서관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확신위에 헌법이 서약하는 일본의 민주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서명으로 한다.」고 설립취지를 명문화하여 국민의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과 정확한 정보제공의 역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91년도 12월말 현재 자료를 보면 도서는 5,708,826권, 지도 348,623권, 레코드 346,130, 마이크로필름 194,474, 신문잡지등 140,000 국회에 대한 서비스로는 연간 참고봉사가 17,527권, 이용도서 9,231권이며 행정사법부에 대한 봉사로서 참고봉사 회답 915건, 대출자료 2,937권, 일반공중에 대한 봉사는 참고봉사회답 289,550건, 관외대출도서 13,779권, 관내열람도서 1,557,390권, 일일평균 열람자수 6,039권, 일일평균 열람자수는 1,799명으로서 일본국민들의 자료이용이나 연구열이 대단함을 알 수 있었다.

도서관내의 사진촬영은 제한되어 있으며 시각장애자들을 위해 점자도서관을 통해 자료를 대출해 주고 있음은 우리나라 도서관이 장애인 정

책에 소홀함과 비교가 되었다.

우리나라 자료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이화여대도서관을 통하여 기증받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과 비교해 볼때 현격한 차이가 있었으며 어느때쯤이면 우리도 이 정도에 이르게 될까 부러움이 앞서기만 했으며 국가에서는 세계화에 걸맞는 국가도서관체제를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한다.

바. 高槻市立圖書館

인구 36만 2천 300명 정도의 도시로서 1971-1975에 인구가 급증한 다카사끼시는 오오사까시 북동부로서 오오사까와 교토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다카사끼 도서관은 시청과 함께 있는 복합시설로 된 도서관으로서 중앙도서관 덴진산도서관, 코테라이케도서관의 3개 도서관으로 되어있다.

복합건물내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신속하지 못하며 도서관 행사추진 등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시직원, 시의원 등에게 도서관을 쉽게 이해시키는 장점도 있다 한다.

다카사끼 도서관의 운영개요를 보면 “생애학습 사회의 시대라고 하고 있는 오늘 도서관이 완수하는 역할은 점점 중요시 되어가고 있다. 또 시민상호간의 연대감, 마음의 교류란 점으로도 매력이 있고 오고가기 쉬운 도서관으로 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상으로 이용자 서비스에 힘쓰겠다”라는 방침을 정하고 주민봉사에 노력하고 있다.

중앙도서관은 平成 6년(1994년) 4월 8일 개

관을 했으며 관장, 도서관운영위원회, 관장보좌관리계, 업무계로 조직이 되어 있으며, 관장은 高槻市教育委員會 社會教育部 次長을 겸한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운영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교대표자, 사회교육단체, 사회교육위원, 국민관 운영심의회위원, 학식경험자 등으로 구성하며 연2회 회의를 개최한다.(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직원은 20명(사서직 10명)이며 비상근무직원 3명과 필요시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전용면적은 2,965,99㎡며 1층에는 도서반납을 할 수 있도록 반환대가 있으며 2층에는 일반도서, 아동서, 시청각, 잡지 등의 코너가 있으며 3층에는 참고도서, 향토자료실, 서고, 대면낭독실, 회의실(2), 사무실, 대접실 등이 있다.

개관시간은 월, 수, 금요일은 10:00-19:00까지 목, 토, 일요일은 10:00-17:30까지 주민에게 이용을 시키고 있다.

휴관일은 국민휴일, 화요일(단, 이날이 휴일이 된 경우 그 이튿날), 제5일요일, 관내 정리일(원칙적으로는 매월1일), 특별정리기간, 연말연시에 휴관을 실시하고 있다.

총장서는 129,807권이며 연간 자료 이용은 일반도서 869,314권, 시청각자료 167,836점을 이용시키고 있었다.

3개 도서관의 운영비는 7억 2천 553만엔이며 도서관구입비는 중앙도서관 9천800만엔, 덴진산도서관 1,200만엔, 코테라이케도서관 2,800만엔 총 1억4천2백만엔에 이르고 있다.

덴진산도서관 총장서는 236,528권이며, 고데라이케도서관은 196,800권이다.

년간 이용도서는 덴진산도서관이 427,428권, 고데라이케도서관 473,874권 이용시키고 있으며 덴진산도서관에서는 학교 또는 주택단지 17개를 순회하며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15개의 작은도서관(문고)을 봉사거점으로 삼아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체제를 확립하고 있음은 우리 공공도서관에서도 이러한 작은 도서관을 거점으로 자료대출봉사, 프로그램봉사, 청소년봉사 등을 개발해야 하며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이 함께하는 공동의 행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법에서 지도, 지원토록 되어 있음을 상기바람)

6. 종합소견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받아 전국에 2,600여개의 도서관이 지역 주민에 봉사하고 있는 일본 공공도서관은 각 자치구에 중앙도서관과 여러개의 지역도서관이 상호작용을 하며 중앙도서관은 관내 이용중심이며 지역도서관은 관외봉사에 중점을 두고 자료이용중대를 위하여 분관, 문고, 이동도서관 등의 봉사체제를 확립하고 있으나 아직도 주민들이 도서관을 더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주민들은 공공도서관 이용관계도, 도서관을 설립해 달라고 요청할줄도 모르는 것과 대조적이며 일본국민들의 문화의식이 높음을 느낄수 있을것 같다.

지역의 중앙센터 도서관으로서의 대형도서관

과 각종 작은 도서관 설립을 서둘러야 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체제를 하루 속히 마련해야 겠다. 학생들의 학습실(일반 열람실)을 자료 열람실 위주로 신속히 전환해야만 한다.

연수를 마치고 몇가지 제언을 한다면

1.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이 시급하다.
2. 전 열람실을 개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3. 작은 도서관(공, 사립문고)설립을 법취지에 맞게 많이 만들어 지도록 자치단체에 촉구해야 한다.
4. 작은 도서관, 문화원, 박물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학교, 교회 등의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등과 독서진흥을 위한 공동의 지역행사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5. 도서기탁제도를 제도화해야 한다.
6. 주민들에게 도서관 교육, story telling, 독서지도, 도서선택법, 정보 검색 등 도서관과 관련된 교육을 현장(작은 도서관, 교회, 복지회관, 군(구)민회관 문화원)에 나아가 교육 또는 토론할 수 있는 장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
7. 학교, 군부대, 공장 등과 협력하여 도서전시회, 사진전시회, 미술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지역의 개인작품전 등을 도서관에서 개최하며 홍보등을 해주어야 한다.
8. 출판사, 서적상 등과 공동의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
9. 문화관련 단체와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10. 지역의 언론기관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11. 지역의 행정기관 등에 도서관 홍보를 해야

- 한다.
12. 지역의 유아, 아동 등을 위한 story telling, 아동극, 슬라이드 교육과 성인을 위한 book talk 등을 실시해야 한다.
 13.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14. 주민과 사적 친분 또는 교분을 맺어야 한다.
 15. 도서관 간부들이 지역의 학교장, 단체장, 사회단체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16. 주민의 요구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7. 주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사서가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8.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국립도서관, 국회도서관등과 상호협력체제를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주민욕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19. 지역내에서의 사서들의 소모임을 활성화 해야 한다.
 20. 지역주민 독서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21. 퇴직자 program을 만들어 주민교육(평생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2. 주민들이 도서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화합의 장소로서 활성화 해야 한다.
 23. 공공주택단지 주부들의 고급 인력을 도서관 운영과 연계하여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몇가지 연수 소견을 적어보았다. 공공도서관 운영시 또는 사서들의 업무에 작으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세계화를 위한 도서관은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한다.